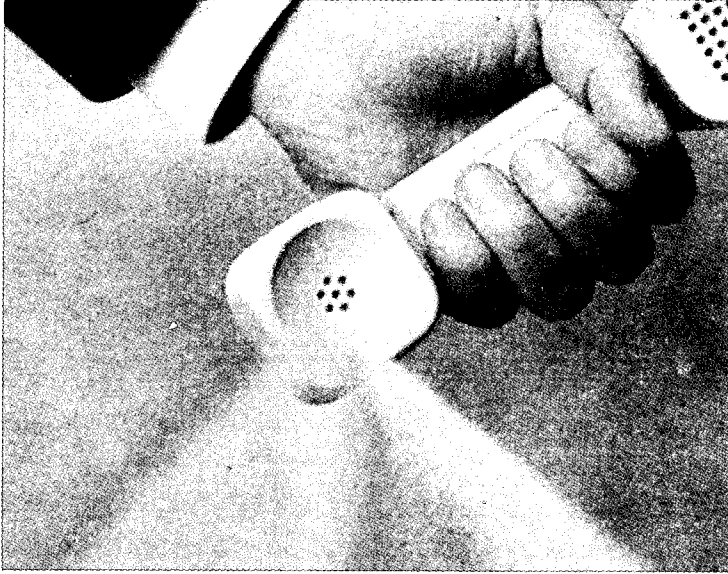


#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 비밀보호제도

-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법제코너



## ◇ 정보사회에서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최** 근에 정부에서나 기업·학계등에서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정보화로 부터」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정보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고도정보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이하 “공공DB”라 함)를 본격적으로 개발·지원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크게 확충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다.

특히 UR을 통한 대외개방에 따라 정보통신산

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고속통신망의 구축과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한편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정보, 전산체제에 의한 문서거래(EDI), 개인간의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대화 및 의사전달의 확대보급 등에 대하여 그 비밀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정보통신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다.

지난번(93 정기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93. 12. 27, 법률 제4,650호)은 통신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개요)**

-통신의 자유 신장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헌법(제18조)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하도록 이 법률에서 명문화하였다(동법 제1조)

- 정보통신사업도 적용대상

이 법률에서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電磁的方式)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헌·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동법 제2조 제3호)

이 법률에서 ‘전기통신’에 대한 용어정의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사업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헌·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컴퓨터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송신·수신 등의 일체 정보통신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사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도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감청(監聽)의 정의

이 법률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감청(監聽)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용어정의하였

다.(법 제2조 제7호 내지 제8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헌·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용어정의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내용을 지득하거나 또는 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통신의 당사자(송신자·수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감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 예외로 감청이 허용되는 범위 (법 제3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절대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환부우편물의 처리 : 폭발물등 위험소포를 뜯어보거나, 수취인 불분명한 우편물 등을 처리할 경우
-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
-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 관계법에 의하여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의 통신관리
- 파산자에 대한 통신 :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 대한 통신의 수령
- 혼신제거(混信) 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법 제5조)

우편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등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이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감청등의 허가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허가한다.

###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법 제10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의 용어정의에서 감청설비에 관하여 밝힌 바 있거니와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용어정의대로 해석한다면 '녹음기'의 경우도 감청설비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다. 특수한 전자 또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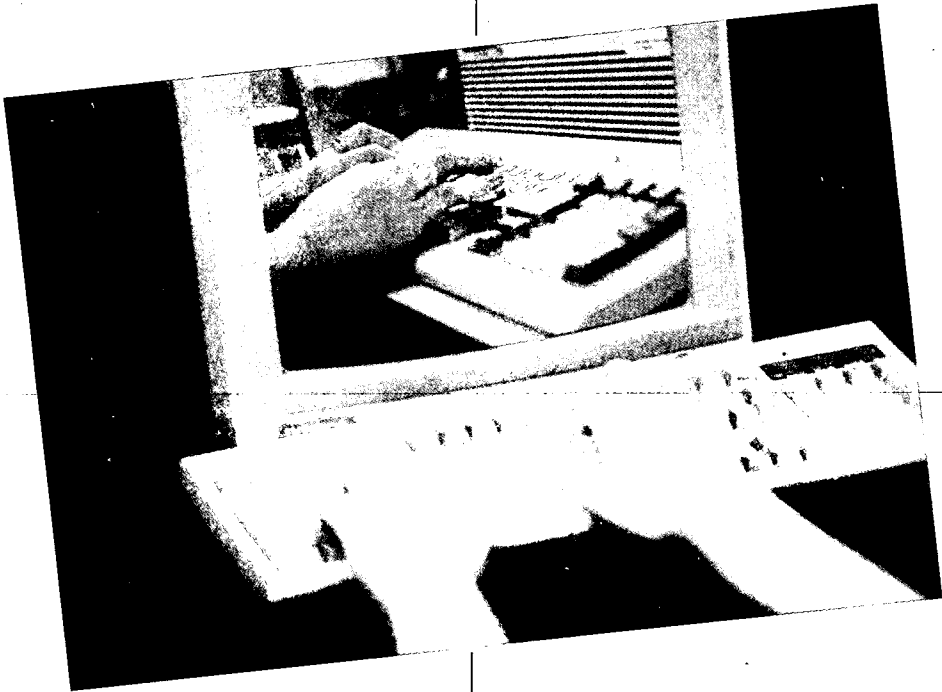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통신의 내용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밖에 감청설비를 허가받지 아니라고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한 자와 광고한 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DB사업운영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

DB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를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서비스



장치에 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녹음기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제외된다.

### - 벌칙규정(법 제16조)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통신비밀보호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 최신정보가 아닌 것의 교정,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등 작업을 위하여 정보의 흐름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컴퓨터바이러스 등 오염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처치, 문란·폭력 기타 비도덕적인 정보 및 반사회적·반국가적 정보의 흐름을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DB사업자에게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DB사업자가 업무상 정보의 흐름을 점검·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예컨대, PC통신에서 비밀보장등 비밀코드에 의한 정보교환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청하여서는 아니된다(이 법률 제14조)

또한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용약관에 가입자(이용자)로 부터 ①운영테스트, ②안전성확보를 위한 보안점검, ③에러등 장애사고방지를 위한 작업, ④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가입자의 동의를 미리 얻어서 '감청'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DB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의 송·수신등 서비스를 그 목적으로 하겠지만 특수한 경우 즉, 공개될 경우 법률상 저촉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특별관리 즉 비밀보호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이 법률의 적용이 강화될 경우 DB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 비밀보장을 위한 「보안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통신비밀의 보장과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강구조치의무는 기존의 법률 예컨대, 「전산망법」(제23조 : 전산망사업자의 준수 의무, 제22조 : 안전성 확보, 제25조 : 비밀침해 금지)에도 명문화되었고, 「전기통신기본법」(제21조 : 목적의 사용제한),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 전기통신설비보호, 제54조 : 통신비밀의 보호)등에 의해서도 그동안 실시

되어 왔었다.

## ◆ 맺음말

이번에 새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최근에 정보통신기기가 첨단화함에 따라 도청이 수월해지고 한편으로 정보통신 설비의 이용이 각분야로 보급·확대됨에 따라 통신의 비밀과 자유보장이 위협받게 되었다.

개인간의 자유로운 대화, 사생활정보의 전산처리유통, 중요한 국가비밀 및 영업비밀, 기타 통신설비를 이용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공개 또는 감청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DB사업등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은 「정보통신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과 시행이라 하겠다.